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1 선고 2024나12964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1 선고 2024나12964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2. 2 선고 2022가단514228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한별 담당변호사 김혜원

피고, 피항소인주택도시보증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승 담당변호사 김영옥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흥인 담당변호사 곽세열

변론 종결2024. 7. 3.

판결 선고2024. 8. 21.

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2. 2. 선고 2022가단5142285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.
-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.

가.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64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2. 6. 8.부터 2024. 8. 21.까지는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.

나.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
다. 위 가.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3.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%는 원고가, 90%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 원고에게,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은 264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, 예비적으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9,155,512원 및 그중 240,000,000원에 대한 2022. 5. 2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.1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(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감축·변경하였다)¹⁾.

[항소취지]

원고 : 제1심판결을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.

피고 주식회사 B: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. 다만, 제1심판결 11면 10~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『다. 소결론

2023. 2. 23. 기준 잔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331,346,564원(= 247,299,950원 + 84,046,614원)으로 이 사건 보험가입금액 264,000,000원을 초과한다.

피고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264,000,000원(보험가입금액)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,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. 6. 8.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24. 8. 21.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』

원고의 예비적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,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. 또한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.

재판장판사박대준

판사염기창

판사한숙희

1) 항소 취지와 같이 청구도 변경한 것으로 선포한다.